

IV. 주요국의 진입·퇴출 주요 규제

1. 미국(뉴욕주)

가. 보험회사 현황

미국의 보험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1999년 4,996억 달러에서 2008년 8,107억 달러로 성장하였고, 손해보험회사는 1999년 5,554억 달러에서 2008년 8,093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생명보험회사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데 비하여 손해보험회사는 2002년 5,591억 달러에서 2003년 7,993억 달러로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 보험회사 수는 2008년 기준 손해보험회사 3,326개, 생명보험회사 995개이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1999년 1,320개였던 것에 비하여 지난 십년간 300여 개 이상 감소하였다.

〈표 IV-1〉 미국 보험회사 수 및 보험료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 1999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 회사 수 | 생명보험 | 1,320 | 1,166 | 1,111 | 1,074 | 1,019 | 995 |
| | 손해보험 | 3,309 | 3,405 | 3,239 | 3,288 | 3,299 | 3,326 |
| 보험료 | 생명보험 | 499,628 | 601,854 | 607,056 | 527,483 | 778,804 | 810,715 |
| | 손해보험 | 555,417 | 824,688 | 805,025 | 863,895 | 813,994 | 809,351 |

자료: OECD(2010).

미국 생명보험시장은 2009년 기준 상위 10개사가 57.6%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상위 5개사가 41.6%를 차지한다. 특히 상위 5개사의 점유비는 2005년에 31.8%를 차지하였던 것에 비하여 그 비중이 10%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집중도는 생명보험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상위 5개사의 경우 2005년 34.2%에서 2008년 현재 33.0%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상위 10개사의 점유비는 2005년 50.0%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이다.

〈표 IV-2〉 미국 생명보험산업 집중도

(단위: %)

| 구분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생명 보험 | CR5 | 31.8 | 33.2 | 34.8 | 36.8 | 41.6 |
| | CR10 | 52.5 | 53.6 | 55.4 | 56.1 | 57.6 |
| 손해 보험 | CR5 | 34.2 | 33.5 | 33.4 | 33.0 | - |
| | CR10 | 50.0 | 49.8 | 49.6 | 49.4 | - |

자료: Axco(2011).

나. 진입규제

1) 보험업 진입 형태

미국 뉴욕주에서는 보험법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제1102조). 뉴욕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형태는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위보험종목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손해보험회사(article 41. property/casualty), 생명·상해·건강보험회사(article 42. life), 상호교환보험회사(Reciprocal)³⁶⁾ 및 로이드(article 41), 금융보증보험회사³⁷⁾(article 69), 캡티브

36) 개인, 기업, 혹은 회사,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 등 가입자(subscribers)들이 보험을 서로 교환하고 약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한도만을 보상해주는 보험조직을 말하며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³⁸⁾(article 70. captive insurance), 공제조합(article 45. fraternal benefit society), 보험교환소(article 62)를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적형태는 주식회사(stock company)와 상호회사(mutual company)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 부분별 영위회사에 대해 정의, 영위보험종목, 인가여부, 재무적요건(자본금, 잉여금, 예치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의 진입규제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2) 보험업 면허 종류

뉴욕주의 보험사업 면허는 32개 세부종목을 정의하고 있으면서 이를 인가단위로 하고 있다(제1113조 Kinds of insurance authorized). 이들 세부종목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구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생명보험(life), 2. 연금(annuities), 3. 상해의료보험(accident and health), 4. 화재보험(fire), 5. 각종재산보험(miscellaneous property), 6. 누수보험(water damage), 7. 도난보험(burglary and theft), 8. 유리보험(glass), 9. 보일러기계보험(boiler and machinery), 10. 엘리베이터보험(elevator), 11. 동물보험(animal), 12. 충돌보험(collision), 13. 대인배상책임보험(personal injury liability), 14. 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15. 산재및사용자배상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16. 보증보험(fidelity and surety), 17. 신용보험(credit), 18. 권원보험(title), 19. 자동차및항공기기체보험(motor vehicle and aircraft physical damage), 20. 해상및내륙운송보험(marine and inland marine), 21. 선주책임보험

37) 금융보증보험회사로 인가를 받은 경우 잔존가액보험, 보증보험(신원, 금융기관, 성능보증 제외), 신원신용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제6902조).

38) 캡티브 보험회사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해건강보험, 유리보험, 모기지보험, 금융보증보험의 원보험과 재보험을 인수할 수 없다(제7003조). 또한 캡티브사는 산재보험(WC/EL),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서는 원보험사업을 할 수 없다. 캡티브사의 자본금 및 잉여금은 순수캡티브는 10만 달러, 25만 달러(상호회사 20만 달러)이고, 그룹캡티브는 20만 달러, 50만 달러(상호회사 20만 달러)이다.

(marine protection and indemnity), 22. 잔존가치보험(residual value), 23. 모기지보증보험(mortgage guaranty), 24. 실업신용보험(credit unemployment), 25. 금융보증보험(financial guaranty), 26. 갭보험(gap), 27. 상품보상보험(prize indemnification), 28. 서비스계약보상보험(service contract reimbursement), 29. 법률서비스보험(legal service), 30. 비자발적실업보험(involuntary unemployment), 31. 소득보상보험(salary protection), 32. 기타보험(substantially similar kind of insurance)

보험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고 보험사업을 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보험사업의 영위면허를 인가받지 않았거나 또는 해당 면허취득의 요건을 면제받지 않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위반한 경우에는 1,000 달러,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각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제1102조(a)).

또한 뉴욕주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고, 보험계약을 하나로 정의하고 보험종목별로 상세한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처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금지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겸영이 가능한 종목들을 제시하고 있는 형태로 보험종목을 제한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property & casualty insurance company)는 인가받은 기본보험종목을 1개 이상 영위할 수 있으며 비기본종목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 이상 영위할 수 있다(제4102조(b)). 손해보험회사의 기본 보험영위종목(basic kinds of insurance)은 4. 화재보험(fire), 7. 도난보험(burglary and theft), 8. 유리보험(glass), 9. 보일러기계보험(boiler and machinery), 10. 엘리베이터보험(elevator), 11. 동물보험(animal), 13. 대인배상책임보험(personal injury liability), 14. 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주식회사만 허용, 15. 산재및사용자배상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16. 보증보험(fidelity and surety), 17. 신용보험(credit), 20. 해상및내륙운송보험(marine and inland marine), 21. 선주책임보험(marine protection and indemnity)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대물배상책임보험은 주식회사만 허용하고, 선주책임보험은 상호회사만 허용된다(제4101조(a)).

또한 기본보험이 아닌 종목(non-basic kinds of insurance)은 3.상해의료보험(accident and health)중 순수한 상해사망 및 의료비담보보험, 해약불가장해보험, 5.각종재산보험(miscellaneous property), 6.누수보험(water damage), 12.충돌보험(collision), 14.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상호회사만, 19.자동차항공기기체보험(motor vehicle and aircraft physical damage), 20.해상및내륙운송보험(marine and inland marine), 21.선주책임보험(marine protection and indemnity), 22.잔존가치보험(residual value), 24.실업신용보험(credit unemployment), 26.갭보험(gap), 27.상품보상보험(prize indemnification), 28.서비스계약보상보험(service contract reimbursement)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 뉴욕주는 손해보험회사에게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권원보험의 재보험과 해외에 소재한 리스크의 권원보험의 인수를 금지하고 있다(제4101조(d)).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일지라도 영위하는 보험종목에 대해 기본보험종목과 비기본종목에 대한 제한을 두어 다른 종목의 겸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제4102조(b)).

먼저 주식회사인 손해보험회사가 7.도난보험(burglary and theft), 8.유리보험(glass), 9.보일러기계보험(boiler and machinery), 10.엘리베이터보험(elevator), 11.동물보험(animal), 13.대인배상책임보험(personal injury liability), 14.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15.산재및사용자배상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16.보증보험(fidelity and surety), 17.신용보험(credit)을 영위하고 있으면 3.상해의료보험(accident and health) 중 순수한 상해사망 및 의료비담보보험, 해약불가장해보험, 6.누수보험(water damage), 12.충돌보험(collision), 22.잔존가치보험(residual value), 24.실업신용보험(credit unemployment), 26.갭보험(gap), 27.상품보상보험(prize indemnification), 28.서비스계약보상보험(service contract reimbursement), 30.비자발적 실업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4.화재보험만을 인수하는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5.각종재산보험(miscellaneous property), 6.누수보험(water damage), 12.충돌보험(collision),

19.자동차및항공기기체보험(motor vehicle and aircraft physical damage), 20. 해상및내륙운송보험(marine and inland marine)을 인수할 수 있다.

그리고 20.해상과 내륙운송만을 인수하는 손해보험회사는 12.충돌보험(collusion), 19.자동차및항공기기체보험(motor vehicle and aircraft physical damage), 21.선주책임보험(marine protection and indemnity)을 인수할 수 있다. 13.대인배상책임보험(personal injury liability)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는 14.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19.자동차항공기기체보험(motor vehicle and aircraft physical damage), 29.법률서비스보험(legal service)을 인수할 수 있다.

상호회사인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보험회사가 7.도난보험(burglary and theft), 8.유리보험(glass), 9.보일러기계보험(boiler and machinery), 10.엘리베이터보험(elevator), 11.동물보험(animal), 13.대인배상책임보험(personal injury liability), 15.산재및사용자배상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16.보증보험(fidelity and surety), 17.신용보험(credit)을 인수하고 있으면 14.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을 인수할 수 있다.

생명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는 1.생명보험, 2.연금, 3.상해건강보험, 29.소득보상보험, 31.법률서비스보험, 재보험 등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자회사를 통해 투자자문, 투자관리서비스, 보험회사 운영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제4205조).

재보험의 경우에는 종목으로 열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업재보험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보험도 원수보험종목과 유사하게 제한을 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상호교환보험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나 상호회사에 관계없이 인가받은 보험종목에 한정하여 재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타주 보험회사(foreign insurer)나 외국보험회사(alien insurer)도 동일하게 인가된 종목에 한해 재보험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특수한 리스크에 대한 재보험을 추가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신원보증이나 보증보험을 인가받은 보험회사는 계약에 의한 성능보증과 관련한 재보험을 영위

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상해보험을 인가받은 보험회사는 항공기의 제조, 소유, 작동과 관련한 리스크의 재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제1114조).

3) 면허기간

주내 보험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 면허기간은 제한이 없이 사업을 철회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그러나 타주 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는 7월 30일에 종료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제1103조).

4) 면허신청절차

가) 제출서류

① 표준사업인가신청서(UCAA)

뉴욕주 보험법 제43절의 비영리법인 및 건강관리조직(HMO)을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는 사업인가 신청 시 NAIC의 ALERT(Accelerated License Evaluation Review Techniques)프로그램에 근거한 표준사업인가신청서(UCAA: Uniform Certificate of Authority Application)를 사용해야 한다. ALERT프로그램은 사업인가신청서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전체에서 채택하고 있다.³⁹⁾

표준사업인가신청서(UCAA)는 해당 주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주에서 해당 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사업참여신청서(Primary Application)가 있고, 다른 주에서 이미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사업확대신청서(Expansion Application)가 있다. 그리고 이미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사업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사업인가내용변경신청서(Corporate Amendments

39)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http://www.naic.org/industry_ucaa.htm)

Application)가 있다.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및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사업참여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요건

| 종류 | 내용 |
|--------------------------------------|--|
| 면허신청서 | 신청 대상 보험종목을 특정하고 있어야 함 |
| 신청수수료 | - |
| 법정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 | 신청자는 면허신청서에 해당 주의 법정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함 |
| 법정공탁금요건 | - |
| 상호 및 명칭의 인가 | - |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개요, 임시재무보고서 및 완성된 질문표로 구성되어 있음 |
| NAIC 지주회사등록보고서 | 신청자가 지주회사 산하인 경우 직전년도 form B에 의한 등록 보고서 또는 NAIC 모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보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
| 법정회원 | 주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복수의 신용평가기관, 예금자보호기관, 기타 기관에 가입할 것을 의무하고 있음 |
| SEC 신고서(SEC filings) 또는 연결 GAAP재무보고서 | 신청회사, 그 모회사 또는 그 최상위지주회사가 과거 3년 이내 공모와 관련해 SEC에 신고 내지는 등록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과거 12개월간 8K, 10K, 또는 10Q의 신고를 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신고에 대해 추가 또는 수정을 포함한 신고서를 SEC로부터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입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석으로 기입해야 함. 또한 신청회사, 그 모회사 또는 그 최상위 지주회사가 주식공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직전년도 연결 GAAP 재무보고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
| 부채자본비율보고서 (지주회사 산하인 경우) | 5년, 10년, 20년 비율 |
| 자산관리협정 (Custody Agreement) | 신청서에 신청회사의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다른 조직에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언급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신청회사가 자사주, 채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실제로 현물로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자사의 배타적 관리 하에 대여금고 안에 넣어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신청서에 이들 유가증권의 소유 및 (또는) 관리하는 조직들 간에 체결한 서면 협정서를 첨부해야 함 |

| | |
|------------------------|--|
|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 일체 | 대부분의 주에 공문서법(Public Records Act)에 따른 일반인에 대한 정보공개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제출서류는 주별로 다름 신규신청의 경우 ① ~ ⑪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① 신청서, ② 기본정관, ③ 장 송달에 관한 임명, ④ 부속 정관, ⑤ 연차보고서, ⑥ 경영자의 토의, ⑦ 계리사 의견서, ⑧ 감사 완료된 재무보고서, ⑨ 시장행위검사, ⑩ 재무검사보고서, ⑪ 분기보고서 |
| NAIC 사업관계자 선서 | 신청자의 임원, 이사, 핵심경영자, 신청회사 및 그 최상위 지주 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
| 기타 각 주에서 필요로 하는 고유한 서류 | 뉴욕주에서는 별도의 고유제출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
| 다른 주로부터 본사 이전 시 제출 서류 | ① 연차보고서(부속서류 첨부), ② 분기보고서, ③ RBC 보고서, ④ 독립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⑤ 검사보고서, ⑥ 적법증명서, ⑦ 재보험 체크리스트 |

자료: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http://naic.org/industry_ucaa_primary.htm)

② 정관

정관(corporate charter)은 보험사업 면허를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중 하나로 회사설립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01조(a)(4),(5)).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 사항으로 “회사명칭(상호회사인 경우 「상호」라는 문자가 필요),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취급하는 보험종목, 회사의 권한 행사 방법, 이사 수(권원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13명 이상일 것. 단, 허용자산이 15억 달러 미만인 생명보험회사는 9명 이상 가능), 이사 및 임원의 선임시기 및 방법, 결원 보충방법, (이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항상 이사의 과반수는 미국시민 권보유자와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은 뉴욕주 거주자이어야 함), 해당 회사의 제1회 연차총회일까지 재임하게 되는 이사의 성명 및 우편물 발송 주소, 회사의 존속기간(30년 이상일 것), 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해당회사의 사업 대상, 목적, 경영 및 지배구조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기초서류

뉴욕주는 보험사업의 면허를 받을 때 보통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제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면허심사절차

가) 면허절차

보험회사의 진입면허에 대한 심사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심사나 최종심사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심사기간도 없다.⁴⁰⁾ 그러나 감독당국은 보험사업 면허를 내주기 전에 주식회사인 경우는 납입자본금 및 초기잉여금 요건에 대한 검사를 한다.

그리고 상호회사인 경우는 회사가 본법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현금 또는 법에서 정한 투자에 필요한 초기잉여금의 보유 여부, 법에서 정한 보험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사원명부의 사실 여부, 사원들이 보험료를 이미 현금으로 납입하고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약정대로 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심사한다(제1102조(e)(1)).

나) 면허허가기준

사업면허 허가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면허의 발생,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 뉴욕주 주민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설립자 또는 이사가 어떤 문제라도 유죄판결을 받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사업하려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허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제1102조(d),(e)(2),(g)(1)).

40) NAIC의 UCAA에 의하면 신청서 접수 2주, 신청서 검토기간 90일을 규정하고 있다 (http://naic.org/industry_ucaa_primary.htm).

5) 공탁금 및 자본금요건

뉴욕주는 보험회사의 면허의 요건으로 납입자본금(minimum paid in capital)과 초기잉여금(minimum paid in surplus)을 영위하는 보험종목과 회사형태(legal form)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면허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공탁금(deposit)을 요구하고 있다.

가) 생명보험회사

① 공탁금

영업허가를 받기 이전에 허가신청자는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 또는 적격 유가증권으로 감독관에게 공탁해야 한다(제1102조(e)(3)).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을 취급하는 회사, 상해건강보험회사, 뉴욕주법률서비스회사는 20만 달러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제4206조).

② 자본금 및 잉여금

주식회사 형태의 생명보험회사는 각각의 종목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음 <표 IV-4>와 같이 납입자본금 및 초기잉여금이 필요하다. 생명보험 또는 연금보험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자본금 200만 달러가 필요하고 초기잉여금으로 400만 달러와 납입자본금의 200% 중 큰 금액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경우 (2)연금, (3)상해의료보험, (29)법률서비스보험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금 또는 잉여금 없이도 영위할 수 있다(제4202조(a)(1)).

〈표 IV-4〉 생명보험회사(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

| 보험종목 | 납입자본금 | 초기잉여금 |
|------------------|---------|---------|
| (1)생명보험 (2)연금 | 200만 달러 | 400만 달러 |
| (3)(i) 상해의료 | 20만 달러 | 10만 달러 |
| (3)(ii) 소득보상 | 30만 달러 | 15만 달러 |

주: 법률서비스보험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자본금과 잉여금 없이 영위가 가능함.

〈표 IV-5〉 생명보험회사(상호회사)의 초기잉여금 및 최저잉여금 요건

| 구분 | 보험종목 | 초기잉여금 | 최저잉여금 |
|----|---------------------------------|---|---|
| ① | (1)생명보험 | 15만 달러 | 10만 달러 |
| ② | (2)연금 | 20만 달러(생명보험 허가받은 경우 5만 달러 추가) | 15만 달러(생명보험 허가받은 경우 5만 달러 추가) |
| ③ | (3)(i)상해의료 | 30만 달러 | 20만 달러(82. 7. 1 이후 면허) 10만 달러(82. 6. 30 이전 면허) |
| ④ | (1)생명보험, (3)(i)상해의료 | 45만 달러 | 30만 달러(82. 7. 1 이후 면허) 20만 달러(82. 6. 30 이전 면허) |
| ⑤ | (3)(ii)해약불가 소득보상 (2)법률서비스 | 상기 ① ~ ④의 적용 가능 최고 금액에 10만 달러 이상을 더한 금액 | - |

상호회사 형태의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보다 훨씬 낮은 초기잉여금(initial surplus)⁴¹⁾ 및 최저잉여금(minimum surplus)을 요구하고 있고 종목별 요구금액도 주식회사에 비해 더 세분화하고 있다. 상호회사가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경우 요건은 〈표 IV-5〉와 같다(제4208조).

41) 초기잉여금은 사업면허를 받기위해 납입된 잉여금을 의미하며 최저잉여금은 사업면허 이후에 보험회사가 파산하지 않도록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을 의미한다(제4208조(2)).

나) 손해보험회사

① 공탁금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상호회사를 불문하고 하나의 보험종목을 영위할 때는 감독기관에 적격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7.도난보험(burglary and theft), 8.유리보험(glass), 9.보일러기계보험(boiler and machinery), 10.엘리베이터보험(elevator), 11.동물보험(animal), 13.대인배상책임보험(personal injury liability), 14.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15.산재및사용자배상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16.보증보험(fidelity and surety), 17.신용보험(credit) 중 하나 이상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으로의 50만 달러, 납입자본금, 초기잉여금 중 적은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보험종목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경우에 최저공탁금은 40만 달러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인수하거나 미국 외에 소재하는 보험물건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300만 달러 이상을 감독당국에게 공탁해야 한다(제4104조).

② 자본금 및 잉여금

주식회사 형태의 손해보험회사는 각각의 종목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 IV-6>와 같은 납입자본금 및 초기잉여금이 필요하다(제4103조). 보험종목별 요건은 종목별로 적용하는 A그룹과 화재보험과 해상 및 운송보험에 적용하는 B그룹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A그룹의 경우 개별인가 형태로서 각각 별도의 최저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종목을 영위하는 경우 이들 종목별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A그룹에 속하는 보험회사가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목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B그룹의 종목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인가받은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재보험을 영위하거나 해외 소재 물건을 인수하

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잉여금을 최저 3,5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제4103조(a)(4)).

〈표 IV-6〉 손해보험회사(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

(단위: 만 달러)

| 구분 | 해당 종목 | 납입자본금 | 초기잉여금 | |
|------------------|--------------------|---|-------|------|
| 그룹 A | (7)도난 | 30 | 15 | |
| | 기본종목 | (8)유리, (9)보일러기계, (10)엘리베이터, (11)동물, (14)대물배상책임 | 각 10 | 각 5 |
| | | (13)대인배상책임, (15)산재 | 50 | 25 |
| | | (16)보증 | 90 | 45 |
| | | (17)신용 | 40 | 20 |
| | | 기타 종목당 추가금액 | 10 | 5 |
| | 비기본종목 | (3)(i)상해건강, (3)(ii)소득보상, (6)누수, (12)충돌 | 각 10 | 각 5 |
| | | (22)잔존가치 | 200 | 100 |
| | | (24)실업신용 | 40 | 20 |
| | | (26)(B)갭(차량채무자) | 20 | 10 |
| | | (26)(A)갭(차량채권자), (26)(C)갭(차량외채권자), (26)(D)갭(차량외채무자) | 각 60 | 각 30 |
| | | (27)상품보상 | 30 | 15 |
| | | (28)서비스계약보상 | 200 | 100 |
| | | (29)법률서비스보험 | 0 | 0 |
| | (30)실업 | 40 | 20 | |
| 소계 | | 1,060 | 530 | |
| 그룹 B | (4)화재, (20)해상및내륙운송 | 각 50 | 각 50 | |
| | 소계 | 100 | 100 | |
| 합계(그룹 A와 B 영위 시) | | 1,160 | 630 | |

- 주: 1) 4.화재보험을 허가받은 경우 6.누수보험(water damage)에 대한 추가자본금은 불요.
 2) 4.화재보험 혹은 20.해상및운송보험을 허가받은 경우 12.충돌보험에 대한 추가자본금은 불요.
 3) 4.화재보험을 허가받은 경우 5.기타재산보험, 6.누수보험, 12.충돌보험, 19.차량및항공기기체보험, 20.내륙운송보험에 대한 추가자본금은 불요.
 4) 20.해상및내륙운송보험을 허가받은 경우 12.충돌보험, 19.차량및항공기기체보험, 21.선주책임보험에 대한 추가자본금은 불요.

자료: 뉴욕주 보험법 제4103조 참조하여 정리함.

뉴욕주는 권원리스크(title risk), 모기지보증리스크(mortgage guaranty risk), 금융보증리스크(financial guaranty risk)에 대해 단일종목(mono line)으로만 영위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 설립시와 보험사업 영위하고 있는 동안의 자본금과 잉여금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권원보험회사는 설립시에 납입자본금 50만 달러, 초기잉여금 25만 달러가 필요하고 영업중에는 계약자잉여금 50만 달러를 유지해야 한다. 모기지보증보험회사는 납입자본금 100만 달러, 초기잉여금 100만 달러가 설립시에 필요하고, 영업중에는 납입자본금 100만 달러, 납입잉여금을 50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보증보험회사는 시장에 진입시에 납입자본금 25만 달러, 초기잉여금 725만 달러가 필요하며, 영업중에는 납입자본금 25만 달러, 계약자잉여금 625만 달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 손해보험회사가 지점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을 신탁(trusted surplus)해야 하는데 그룹 A의 보험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요구되는 납입자본금의 150%, 그룹 B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200% 이상의 잉여금을 신탁해야 한다.

〈표 IV-7〉 손해보험회사(상호회사)의 인가 요건

(단위: 명, 개, 달러)

| 구분 | 회원수 | 청약수 | 독립된 리스크수 | 보험 계약수 | 초기 잉여금 | 최저 잉여금 |
|-------------------------|-----|-----|----------|--------|--------|--------|
| (4) 화재 | 50 | 300 | 300 | - | 30만 | 20만 |
| (7) 도난 | 20 | 20 | 200 | 20 | 30만 | 20만 |
| (8) 유리 | 20 | 20 | 300 | 20 | 15만 | 10만 |
| (9) 보일러기계 | 20 | 20 | 20 | 20 | 30만 | 20만 |
| (10) 엘리베이터 | 20 | 20 | 300 | 20 | 15만 | 10만 |
| (11) 동물 | 20 | 20 | 300 | 20 | 15만 | 10만 |
| (13) 대인배상 | 100 | 100 | 500 | - | 50만 | 40만 |
| (15) 산재 및 사용자배 상책임보험 | 40 | 40 | 2,500 | - | 50만 | 40만 |
| | 30 | 30 | 5,000 | - | 50만 | 40만 |
| | 20 | 20 | 7,500 | - | 50만 | 40만 |
| | 10 | 10 | 10,000 | - | 50만 | 40만 |
| (16) 보증 | - | - | - | - | 150만 | 100만 |
| (17) 신용 | 20 | 20 | 2,000 | 20 | 75만 | 50만 |
| (20) 해상및내륙운송 | 50 | 300 | 300 | - | 100만 | 50만 |
| (21) 선주책임 | 20 | 20 | 200 | - | 50만 | 50만 |

자료: 뉴욕주 보험법 제4107조(a)(1) 정리.

상호회사 형태의 손해보험회사는 사업인가를 받는데 필요한 재무적 요건을 초기 잉여금(initial surplus)과 최저잉여금(minimum surplus)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종목별로 회원 수, 리스크 수, 계약 수도 정하고 있다(〈표 IV-7〉 참조).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보험회사는 구성규모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표 IV-8〉 손해보험회사(상호회사)의 잉여금 요건

(단위: 달러)

| 구분 | 종목별 | 초기잉여금 | 최소잉여금 |
|------|---|-------|-------|
| 그룹 A | (7)도난, (9)보일러기계 | 각 10만 | 각 10만 |
| | (8)유리, (10)엘리베이터, (11)동물 | 각 5만 | 각 5만 |
| | (13)대인배상, (15)산재, (17)신용 | 각 30만 | 각 30만 |
| | (16)보증 | 90만 | 90만 |
| 그룹 B | (4)화재 | 30만 | 20만 |
| | (20)해상및내륙운송 | 100만 | 50만 |
| 그룹 C | (3)(i)상해건강, 3(ii)소득보상 | 각 10만 | 각 10만 |
| | (22)잔존가치 | 300만 | 200만 |
| | (24)실업신용 | 30만 | 30만 |
| | (26)(B)갭(차량채무자) | 30만 | 20만 |
| | (26)(A)갭(차량채권자), (26)(C)갭(차량외채권자), (26)(D)갭(차량외채무자) | 각 90만 | 각 60만 |
| | (6)누수, (12)충돌, (14)대물배상 | 각 5만 | 각 5만 |
| | (27)상품보상 | 30만 | 15만 |
| | (28)서비스계약보상 | 200만 | 100만 |
| | (30)실업 | 40만 | 20만 |

자료: 뉴욕주 보험법 제4107조(b) 정리.

또한 상호 손해보험회사가 위의 표에 명시된 보험종목을 영업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룹 A, 그룹 B에 속하는 보험종목을 추가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초기잉여금과 최저잉여금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그룹 A의 영업인가를 받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룹 C의 보험종목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 종목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외의 특수한 경

우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먼저 상호회사가 19.자동차및항공기기체 보험(motor vehicle and aircraft physical damage)을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60만 달러의 최저잉여금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인가받은 상호회사가 재보험과 해외소재물건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 3,500만 달러의 계약자잉여금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은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외국상호손해보험회사의 지점은 주식회사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4107조).

다. 퇴출규제

1) 규제내용⁴²⁾

미국의 경우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퇴출은 주 정부에서 감독, 관리한다. 즉 보험회사의 퇴출은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정부에서 관할하므로 보험회사는 연방정부의 파산법에 의거해서 파산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인수와 합병, 자발적 퇴출 및 비자발적 퇴출 등 퇴출의 형태를 막론하고 주 보험감독청의 동의를 필요하다. 그러나 주별로 퇴출규제를 함에 따라 주별로 퇴출비용과 시간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실제 적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주별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모델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최초로 제정된 모델법은 NAIC가 1978년에 보험회사 갱생 및 청산모델법(NAIC's Insurers Rehabilitation and Liquidation Model Act)을 제정하여 위스콘신주를 비롯한 33개주가 채택하고 있다. 다른 모델법은 NAIC의 전신인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가 1939년에 제정한 통일보험회사청산법(Uniform Insurers Liquidation Act)이 있으며 이법은 뉴욕주를 비롯한 19개주가 채택하고 있다.⁴³⁾ 미국 보험회사의 퇴출절차를 정리해보면 1)정리대상 보험

42) 김현수(2006).

43) 알라바마, 아리조나, 아칸사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플로리다, 괌, 일리노이, 루지아나, 메릴랜드, 메사추세츠(손해보험회사만), 뉴멕시코, 뉴욕,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회사에 감독관 파견(seizure of insurer), 2)보험회사의 갱생절차 개시, 3)갱생이 되지 않은 경우 청산절차 진입, 4)보험회사의 정리 및 자산매각, 5)보험채권 지급, 6)부동산의 정리(closing of estate) 순이다.

〈표 IV-9〉 미국 보험회사의 갱생·청산 원인

| 적용사유 | 국내사 | 타주보험사 | 외국사 |
|-------------------------------|----------|-------|-----|
| 지급불능(insolvency) | 모두 적용 | ○ | ○ |
| 재무자료제출거부 | | ○ | ○ |
| 자본금 또는 잉여금 확충 명령 미이행 | | ○ | × |
| 전인가없이 계약의 포괄이전(bulk transfer) | | ○ | ○ |
| 검사결과 계약자, 채권자, 공공에 위험한 경우 | | ○ | ○ |
| 법규를 위반한 경우 | | ○ | ○ |
| 검사의 거절 | | ○ | ○ |
| 법인설립 및 진입 시 인가요건 유지 실패 | | × | × |
| 1년 이상 영업중지 | | × | × |
| 자발적 청산 결의 | | ○ | ○ |
| 관재인, 강제관리인 임명신청의 대상인 경우 | | ○ | ○ |
| 이사, 주주, 사원의 다수가 결의한 경우 | | ○ | ○ |
| 법인격 취득 후 1년 이내 설립하지 못한 경우 | | × | × |
| 감독당국요청 임원, 이사 해임을 거부한 경우 | | ○ | × |
| 적기시정조치(ACL,MCL)를 받은 경우 | | ○ | × |

주: 타주보험회사와 외국사지점은 자산보전 또는 청산명령을 내리게 됨.

뉴욕주의 경우 허가받은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등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허가 취소, 면허의 제한, 보험료금액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제1104조), 그리고 보험회사가 갱생이나 청산(제7401-7436조), 보험회사의 인수합병(제7101-7121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종류에 따라 갱생 절차의 원인은 다른데 이를 요약하면 〈표 IV-9〉와 같다.

자발적 청산의 경우 주 보험감독청에 퇴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보험회사의 각 채권자 그룹의 50%와 각 채권자 그룹 부채비중의 75%가 동의

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주: Grace 외 2인(2002), pp. 22~23.

해야 자발적 청산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자 그룹에는 (1)모든 보험계약자 (2)보험계약자 외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3)그 외 법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가 포함된다. 보험회사는 제출된 계획에 따라 모든 금전을 지급해야 하고 run-off⁴⁴⁾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assumption reinsurance agreement)을 이행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법원으로부터 자발적인 청산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M&A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자발적 청산과 유사한 절차와 규제를 받는다. 다만 재정적 문제로 M&A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이것을 run-off with 재보험 포트폴리오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게 된다.

비자발적 청산의 경우에는 RBC규제⁴⁵⁾가 중심이다. RBC규제에서는 보험회사의 총수정자본(Total Adjusted Capital)이 RBC기준보다 하락하게 되면 주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어있는데 4단계 제재수준이 있다.

〈표 IV-10〉 미국 보험회사의 적기시정조치

| 조치단계 | RBC비율 | 조치사항 |
|--------------------------------------|----------|--|
| Company Action Level (자율조치) | 150~2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종합적인 재무계획서 제출 • 종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규제 조치수준 적용 |
| Regulatory Action Level (규제조치) | 100~1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시정계획서를 제출 • 보험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보험회사의 영업 및 경영에 대한 조사 및 분석과 함께 적절한 업무개선 명령 |
| Authorized Control Level (감독당국통제) | 70~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여 조정 관리 가능 |
| Mandatory Control Level (강제통제) | 70%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 보험회사에 대한 조정관리 의무적으로 실행 |

주: 적정수준은 200% 이상임.

44) run-off란 신규영업은 하지 않고 기존 보유계약이 만기가 될 때까지만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5) 금융보증보험회사, 권원보험회사는 RBC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보험법에서 보증한도를 담보종목별, 하나의 위험에 대한 보증한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RBC비율이 150~200%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자율조치단계에 해당하며 현재의 재무적 상황을 극복할 종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본전입 계획과 현 재정문제 극복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계획서대로 진행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향후 재정상태 전망, 영업의 질적 내용 및 경영상의 문제점도 제출해야 한다. 수정계획을 감독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적기시정단계인 규제조치를 받게 된다. 두 번째 규제조치단계에서는 종합계획서 제출뿐만 아니라 주보험감독청의 검사 대상이 된다. 이 검사와 추가적인 분석 후에 주보험감독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세 번째 감독당국통제단계는 주보험감독청이 해당 보험회사를 직접 관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보험회사 관리는 파산상태에 있는 보험회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정상이지만 향후 파산이 확실시되는 보험회사도 포함한다. 마지막 단계인 강제통제단계에서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를 직접적으로 강제관리하는 단계로, 보험회사를 재건(rehabilitation)하는 조치를 취하든가 또는 청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서 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보험회사의 재정적 문제 때문에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기준은 통상 RBC규제 등이 중심이 되지만 주 보험법에서는 재정적 이유 외에도 주 보험감독청이 회사 내 부정행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회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퇴출 의사결정은 주 정부에서 RBC규제를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퇴출 가능성이 있는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분석, 조사골격은 FAST(Financial Analysis and Solvency Tracking)시스템이다. FAST시스템은 재무분석이 중심이 되는 IRIS비율과 FAST Scoring System 그리고 보험회사프로파일시스템(Insurer Profile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RBC규제는 자기자본규제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퇴출 의사결정 지표로 사용되지만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는 FAST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실가능보험회사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보험회사를 해당 주보험감독청에 조기경보하고 있다.

Scoring System은 FAST시스템의 핵심으로 약 25개의 재무비율과 변수를

사용하여 각 비율에 대해서 일정한 가중치를 배정하여 총 FAST Score를 계산한다. 이 때 사용하는 변수는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가중치가 적용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총 FAST Score를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추가분석을 위한 즉각조사대상(Immediate), 우선조사대상(Priority) 및 통상조사대상(Routine)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FAST Score 계산 및 우선순위 선정은 객관적인 통계분석 결과 외에 감독당국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 등도 고려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부실보험회사가 선정되고 RBC기준에 의해 청산되면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보험회사 대신 보험보증기금(Insurance Guaranty Fund)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각 주의 보험보증기금은 대형 기업계약자보다는 개인 및 중소 법인계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퇴출하는 보험회사가 가계성보험을 많이 판매한 경우 정부의 개입은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 경우 보험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칠 때 계약자 등에 대한 채권의 배분 우선순위를 9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별로 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다(제7434조, 제7435조). 손해보험회사의 자산배분우선순위는 1순위(class 1)가 재건 및 청산, 자산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자 비용, 2순위는 연방 및 지방정부에 대한 제3자배상청구권,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증기금관련비용이며, 3순위는 2순위에서 제외된 연방정부의 청구권이고, 4순위는 개인당 1,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임금, 5순위는 지방정부의 2등급 이외의 청구권, 제 6순위는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 일반적인 채권, 7순위는 8등급과 9등급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채권, 8순위 후순위채권, 9순위 주주이다.⁴⁶⁾

46) 생명보험회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class 1)는 갱생 및 청산, 자산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자 비용 및 보증기구비용, 2순위는 개인당 1,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임금, 3순위는 지급불능으로 확정된 이후 90일 이전의 통상의 업무과정동안 공급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청구권, 4순위는 보험계약, 연금계약, 기금적립협정계약의 청구권 및 보증기구의 모든 청구권, 5순위는 연방 및 지방정부에 벌금, 몰수권 등, 6순위는 일반채권자 청구권, 7순위는 후순위채권, 8순위는 주주(법 제7435조).

2) 계약자보호제도⁴⁷⁾

NAIC가 주축이 되어 각 주별로 설립된 생·손보별 보험보증기금을 통해 보험 계약자를 보호한다. 전미생명건강보험보증협회(NOLHGA: National Organization of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 보호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미손해보험보증기금(NCIGF: 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Guaranty Funds)은 각 주의 손해보험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보증기구의 가입방식은 인가받은 주의 보증기구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뉴욕주는 생명건강보험보증기구를 제7501~750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손해보험보증기구는 제7601~76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보증기구는 화재특종보험보증기구와 자동차차량배상보장기구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미국 보증기구의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별로 상이하다. 보증상품으로는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생명보험, 연금이 있으며, 비보증증권이나 연금, 투자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법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불능 및 청산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잔여자산이나 감독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주법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불능 또는 청산에 대한 결정 → 보증기금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자료 이전 → 파산보험회사의 잔여자산 또는 주 감독당국의 기보유현금 등을 이용한 보험금 지급).

뉴욕주는 주내 거주자의 원수보험계약만 보호하며, 생명건강보험보증기구는 개인 보험계약자 및 그 수익자와 단체생명보험 또는 단체건강보험에 의해 발행된 보험증권에 대해 1인당 50만 달러를 보호한다. 화재특종보험보증기구는 산재, 잔존가치보험, 모기지보험, 금융보증, 상품보상보험 등은 제외하고 청구건 1인당 100만 달러를 보상하고 미경과보험료는 전액을 보증한다.

47) 보험연구원(20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pp. 260~261.

보증기구의 보증료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증기구의 운영비와 파산재원비용으로 나누어 사전 각출하고 5억 달러가 될 때까지 낸다. 운영비는 허용자산규모를 3등급으로 나누어 정액을 1년에 1회 내고, 파산재원은 3년 평균 보험료의 0.5%를 분기별로 각출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화재특종보험보증기구는 분기보유보험료의 0.5%, 자동차차량배상보장기구는 0.3%를 낸다. 또한 이들의 목표기금액은 각각 1.5억 달러, 준비금의 15%이다.

〈표 IV-11〉 뉴욕주 보험계약자보호제도

| 구분 | 생명보험보증기구 | 손해보험보증기구 | |
|--------|---|-----------------------------------|-------------|
| 기구 | 생명보험건강보증기구 | 화재특종보험보증기구 | 자동차차량배상보장기구 |
| 대상 보험 | 생명, 연금, 건강, 기금적립(변액 중 비보증 제외) | 산재, 잔존가치, 모기지, 금융보증, 상품보상 보험 등 제외 | 자동차차량손해배상 |
| 보장 한도 | 1인당 50만 달러 | 1청구당 100만 달러, 미경과보험료전액 | |
| 보험료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비(자산기준 1회) 0.5억 이하: 200달러 0.5~10억: 1,000달러 10억 초과: 2,000달러 파산기금: 3년 평균 보험료의 0.5%(분기) | 분기보험료의 0.5% | 분기보험료의 0.3% |
| 목표 기금액 | 5억 달러 | 1.5억 달러 | 준비금의 15% |

자료: 뉴욕주 보험법(제7501조~7505조, 제7601~7614조) 정리.

2. 일본

가. 보험회사 현황

일본의 보험산업은 규제완화 등을 계기로 시장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양한 형태의 진입을 허용하고 가격자유화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진입규제의 경우 지주회사의 도입,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입 허용, 소액단기보험사업자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변화는 1980년대 후반의 부동산거품붕괴로 인해 부실해진 보험회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입됨에 따라 시장의 비규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시장구조의 재편이 일어났다.

생명보험의 경우 상위사의 집중도⁴⁸⁾는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 5개사의 점유 비율을 보면 2000년에 63.5%였으나 많은 외국보험회사의 진입으로 2009년에 44.6%로 크게 낮아졌다. CR1과 CR3도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일본 보험산업의 집중도 추이

(단위: %, 억 엔)

| 구분 | | 2000 | 2002 | 2004 | 2006 | 2007 | 2008 | 2009 |
|------|-----|---------|---------|---------|---------|---------|---------|---------|
| 생명보험 | CR1 | 22.3 | 21.3 | 17.9 | 17.5 | 15.8 | 14.8 | 14.1 |
| | CR3 | 48.9 | 45.9 | 40.3 | 39.9 | 38.4 | 31.2 | 32.7 |
| | CR5 | 63.5 | 59.6 | 56.1 | 54.1 | 55.2 | 42.0 | 44.6 |
| | 보험료 | 258,586 | 255,118 | 270,027 | 277,662 | 309,096 | 262,292 | 242,706 |
| 손해보험 | CR1 | 19.0 | 20.1 | 25.3 | 25.4 | 26.1 | 25.1 | 25.2 |
| | CR3 | 41.2 | 54.9 | 61.0 | 60.9 | 62.3 | 60.1 | 61.8 |
| | CR5 | 55.3 | 76.2 | 81.8 | 81.4 | 83.3 | 80.5 | 82.0 |
| | 보험료 | 69,171 | 73,289 | 74,572 | 75,846 | 73,334 | 72,167 | 80,709 |

자료: 일본 보험연구소(각 연도), 『Insurance 생명보험, 손해보험통계호』를 이용하여 작성함.

48) 우체국보험이 생명보험의 상위1사에 해당되므로 이를 감안한 경우에는 상위사의 집중률이 더 높아진다. 2008년과 2009년의 CR1은 23.1%, 22.0%이고, CR3는 46.4%, 45.7%이며, CR5는 61.7%, 63.0%로 나타나 시장구조가 2000년대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손해보험산업은 규제완화 이후 오히려 시장이 더 크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실보험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대형사 중심으로 M&A를 통한 지주회사체제로의 대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현재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CR5)이 전체시장의 82.0%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사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CR1의 경우 2000년 19.0%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25.2%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CR3, CR5는 CR1의 증가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상위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장재편의 원인 중의 하나는 보험회사의 빈번한 진입 및 퇴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2010년 현재, 47개사 중 국내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중인 회사는 43개사이다. 이 중에서 국내자본으로 운영 중인 회사는 19개사(이중 상호회사 5개사)가 있으며 외국자본이 50% 이상 투입된 외자계회사는 15개사,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진출한 회사는 9개사이다. 외국사의 국내 지점형태로 영위하는 4개사에 불과하다.

〈표 IV-13〉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현황

| 구분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6 | |
|--------|-----|-----|------|-----|-----|-----|-----|-----|-----|-----|-----|-------|----|
| 국내사 | 회사수 | 43 | 44 | 39 | 38 | 36 | 35 | 34 | 34 | 38 | 42 | 43 | 43 |
| | 진입 | 1 | 2 | 3 | 3 | 2 | 1 | 1 | - | 4 | 4 | 3 | - |
| | 퇴출 | 1 | 1 | 8 | 4 | 4 | 2 | 2 | - | - | - | 2 | - |
| 외국사 | 회사수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 | 진입 | 1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사 | 회사수 | 47 | 48 | 43 | 42 | 40 | 39 | 38 | 38 | 42 | 46 | 47 | 47 |
| | 진입 | 2 | 2 | 3 | 3 | 2 | 1 | 1 | - | 4 | 4 | 3 | - |
| | 퇴출 | 1 | 1 | 8 | 4 | 4 | 2 | 2 | - | - | - | 2 | - |
| 진입률(%) | - | 3.1 | 4.7 | 5.1 | 3.7 | 1.9 | 2.0 | 0.0 | 8.3 | 7.7 | 5.9 | 0.0 | |
| 퇴출률(%) | - | 1.6 | 12.5 | 6.8 | 7.4 | 3.8 | 4.1 | 0.0 | 0.0 | 0.0 | 3.9 | 0.0 | |

자료: 일본 金融庁(각 연도), 『金融庁の1年 平成21 事務年度版』.

손해보험회사의 구성은 생명보험회사와는 크게 다르다. 2010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 52개사 중에서 국내법인 형태의 회사는 30개사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자본에 의한 회사 22개사(상호회사 없음), 외자계회사 4개사,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 2개사, 재보험전업사 2사가 있다. 외국사의 지점형태의 영위회사는 총 22개사가 있다.

〈표 IV-14〉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현황

| 구분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6 |
|--------|-----|-----|------|------|-----|------|-----|-----|------|-----|-----|--------|
| 국내사 | 회사수 | 36 | 38 | 33 | 30 | 29 | 28 | 26 | 26 | 30 | 30 | 30 |
| | 진입 | 1 | 3 | 4 | 5 | 2 | 1 | 2 | - | 4 | - | 1 |
| | 퇴출 | - | 1 | 9 | 8 | 1 | 2 | 4 | - | - | - | 1 |
| 외국사 | 회사수 | 28 | 26 | 26 | 24 | 24 | 21 | 22 | 22 | 22 | 21 | 21 |
| | 진입 | 1 | - | 1 | - | 2 | 1 | 1 | 1 | 2 | - | 1 |
| | 퇴출 | 3 | 2 | 1 | 2 | 2 | 4 | - | 1 | 2 | 1 | 1 |
| 전체사 | 회사수 | 64 | 64 | 59 | 54 | 53 | 49 | 48 | 48 | 52 | 51 | 51 |
| | 진입 | 2 | 3 | 5 | 5 | 4 | 2 | 3 | 1 | 6 | - | 2 |
| | 퇴출 | 3 | 3 | 10 | 10 | 3 | 6 | 4 | 1 | 2 | 1 | 2 |
| 진입률(%) | - | 4.7 | 7.8 | 8.5 | 7.4 | 3.8 | 6.1 | 2.1 | 12.5 | 0.0 | 3.9 | 2.0 |
| 퇴출률(%) | - | 4.7 | 15.6 | 16.9 | 5.6 | 11.3 | 8.2 | 2.1 | 4.2 | 1.9 | 3.9 | 0.0 |

자료: 일본 金融 庁(각 연도), 『金融 庁 の 1 年 平成21 事務年度版』.

일본 보험시장의 진입·퇴출 특징을 살펴보면, 2003년까지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붕괴에 이은 저금리상황의 지속에 따라 많은 보험회사가 부실해져 정리하는 과정에서 파산처리의 방법으로 합병과 보험회사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실회사가 정리되면서 시장의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외국계 자본이 진출하는 계기가 되어 많은 보험회사가 신설되었다. 생명보험은 지점형태보다는 합작보험회사형태로 많이 진입한 반면에 손해보험은 전부 지점형태로 진입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지주회사로는 밀레아지주회사(동경해상일동화재, 동경해상일동안신생명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파이낸셜생명보험, 일신화재, 이데저인손해보험, 밀레아일본후생소액단기보험), NKSJ지주회사(손보저팬, 손보저팬히마와리생보,

손보저팬DIY생명보험, 세존자동차화재, 일본홍아손보, 일본홍아생보), T&D지주회사(대동생명, T&D파이낸셜생보, 팻&패밀리소액단기보험), MSAD지주회사(삼성주우해상, 삼성주우해상기라메끼생보, 아이오이생보, 삼성주우해상프라이머리, 삼성다이렉트손보, 아이오이니세이동화손보), 소니파이낸셜지주회사(소니생보, 소니손보, 소니라이프에이코), 푸르덴셜지주회사(푸르덴셜생명, 지블렐타생명, 푸르덴셜파이낸셜생명), 약사저팬지주회사(약사생명, 약사손보, 넥스티어생명)가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소액단기보험회사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나. 진입규제

1) 보험업의 구분

일본은 보험업을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 일정한 우연의 사고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 생명보험업 면허의 기본보험업무 범위가 아닌 보험을 인수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보험업법 제2조). 그러나 다른 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업이거나 지방공공단체가 주민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업 등은 보험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험업 면허종류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의 종류는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체 내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업을 금지⁴⁹⁾하고 있다(보험업법 제3조).

49) 생명보험업이 비교적 정확한 통계적 근거에 기초하여 장기계약을 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손해보험업은 추정을 가미한 손해율에 기초하여 단기계약을 인수하기 때문

생명보험업의 면허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①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을 인수하게 된다. 다음에 게시하는 보험도 영위할 수 있다(국내에서 말하는 제3보험업에 해당된다). ② 다음의 원인을 따라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불하거나 이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당해인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도 인수할 수 있다. 여기서 원인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원인으로 하는 사람의 상태, 상해가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출산 및 이를 원인으로 하는 상태, 노화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상태(그러나 사망은 제외한다),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치료 등을 수반하는 행위(조산사가 행하는 조산, 유동정복사가 행하는 시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마, 마사지사가 행하는 시술)”가 해당된다. 또한 생명보험업은 ③ 손해보험회사가 인수한 ②에 대한 재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

손해보험업의 영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① 일정한 우연의 사고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을 인수한다. 그리고 생명보험업의 ②를 인수하거나, ③ 생명보험의 ① 중 해외여행기간 동안 생긴 사망 또는 질병 사망담보를 인수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보증증권업무⁵⁰⁾는 손해보험의 ①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에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하는 보험업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근거법 없는 다수 공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신설된 소액단기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 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2조18항). 소액단기보험업은 피보

에 인수리스크와 보험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해 생보의 장기자금을 손보의 단기 거대리스크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岡田豊基(2008), p. 13.

50) 계약상의 채무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무 중 보험수리에 기초하여 당해대가를 결정하고 준비금을 적립하며 재보험을 이용하여 위험분산을 행하는 등 다른 보험의 고유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1천만 엔 이하⁵¹⁾에 대해 보험기간 2년 이내(손해보험업 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로 하는 보험업으로 연간보험료가 50억 엔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액단기보험업자는 사람의 생존과 관련한 보험, 만기환급금을 지불하는 보험, 특별계정이 의무화된 운용실적연동형보험, 재보험, 보험료 등 기타급부금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 지급하는 보험으로 지급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보험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내각총리장관은 소액단기보험사업자의 등록을 주식회사나 상호회사가 하지 않거나 자본금 또는 기금이 1,000만 엔 미만인 경우, 순자산액이 1,000만 엔 미만인 경우, 정관의 규정 등이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초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거부할 수 있다.

3) 면허신청절차

보험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청장관을 경유하여 내각총리장관에게 면허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심사⁵²⁾를 의뢰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4조). 내각총리장관은 신청서류에 대해 보험업법 제5조에서 정한 면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일로부터 120일⁵³⁾ 이내에 면허를 부여

51) 사람의 사망의 경우 300만 엔, 질병 및 상해담보는 800만 엔, 중증장해보험 300만 엔, 특정중증장해보험 600만 엔, 상해사망보험 600만 엔, 손해보험업 기본보험 1,000만 엔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본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6).

52) 일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5조(예비심사) 법의 규정에 의해 금융 청장관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해당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 이 부령에 정하는 것에 준한 서류를 금융청 장관 또는 재무국장 혹은 후쿠오카 재무 지국장에 제출해 예비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53) 일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6조(표준 처리 기간) 내각총리대신 등은 법, 령 또는 이 부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각 호의 면허,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신청(예비 심사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이 그 사무소에 도달했을 때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노력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의 면허 120일.

12.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방법서등에 정한 사항의 변경의 인가 90일.

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에 조건을 달거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보험업법 제5조).

면허신청서류(〈표 III-15〉 참조)로는 상호 및 명칭, 임원 및 감사(감사위원회)의 성명, 받을 면허의 종류, 본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정관과 더불어 사업방법서⁵⁴⁾, 보통보험약관⁵⁵⁾,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⁵⁶⁾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행규칙 제6조(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는 이유서,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창립총회를 소집한 경우 의사록, 사업계획서, 최근 일계표 및 최근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임원 및 감사의 이력서, 외부 회계법인 참여자의 이력서, 주요 주주의 상호, 명칭, 성명, 보유의결권 수를 기재한 서류, 생명보험업의 면허를 받고자하는 자가 자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의 명칭, 주된 영업소 및 사무소를 기재한 서류, 당해 자회사의 관련된 서류(자회사의 임원의 성명, 업무내용, 최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자본변동계획서, 기타 최근 재무상황이나 업무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생명보험업의 면

54) 사업방법서에는 피보험자 및 보험의 목적의 범위 보험의 종류(재보험 포함),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 및 보험의 목적의 선택 및 보험계약의 체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과 보험료환급금 등의 지불에 관한 사항,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청약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 보험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보험약관대출에 관한 사항, 보험금액, 보험의 종류, 보험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취급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보험계약의 종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종류 및 평가방법,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는 날짜), 적립계정에 대한 사항(적립계정을 설정하는 보험계약 종류, 보험료 중 적립계정으로 경리하는 내용, 적립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

55)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기초한 의무를 면하는 사유,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업무를 면하는 사유, 보험자로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방법 및 보험계약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고 있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항,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한 경우 당사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와 의무,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

56)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보험료 계산방법,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환급금액 및 기타 피보험자를 위해 적립해야 할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계약자가액)의 계산방법 및 기초자료, 사원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미경과보험료 계산방법, 보험금액,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 순보험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허를 받고자 하는 자 및 자회사의 업무, 재산 및 손익상황을 기입된 서류), 제3 분야보험의 원수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초서류에 대한 보험계리사의 확인서류, 사업계획서에는 보험모집계획 및 수지를 예측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아니었던 주식회사가 종전의 목적을 변경하여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업 면허를 신청한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서류 외에 보험업을 영위하기로 결정한 주총회의록, 종전의 정관 및 면허신청 시 현존하는 거래의 성질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최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자본변동계획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표 IV-15〉 일본 보험회사 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

| 구분 | 세부서류 |
|---------------------|--|
| 신청서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자본금, 면허종류, 본점 소재지 • 예상실적: 주요계정, 순자산 계정, 수지견적사항, 경영제지표(자산 이익률, ROA, 손해율, 지급여력비율 등) |
| 기초서류 | 정관,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 첨부서류 | 이유서, 회사등기사항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최근일계표 및 재산과 손익 기재자료, 임원 및 감사의 이력서, 위탁회계법인 이력서 |
| | 주요주주의 상호, 명칭, 성명, 보유의결권 수 기재서류 |
| | 보험회사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종업원 확보상황 서류 |
| | 신청자가 자회사를 가진 경우 관련서류(5종) |
| 회사법 서류 | 기타 서류(상근임원의 적격성과 사회적 신용 여부) |
| | 임원의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 |
| | 외부 회계법인사용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 상호회사의 경우 감사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 |
| 모회사 서류 | 모회사와 당회사의 거래관계 증명서류 등 2종 |
| 조직도 | |
| 등록면허세납부서 | |
| 상업등기법 | 관련서류 |
|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취득인가서 사본 | |

4) 면허심사기준

일본은 보험업법상에 면허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보험업법제5조). 먼저 면허신청자는 보험회사의 업무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산적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의 업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신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출서류가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있는지도 심사⁵⁷⁾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방법서 심사기준(시행규칙 제11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심사기준⁵⁸⁾(시행규칙 제12조)을 정하고 있다.

5) 영위형태 및 자본금요건

일본은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형태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소액단기보험사업자, 외국사 지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식회사나 상호회사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하며,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종목별허가제가 아닌 업 단위로 영업면허를 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요건도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에 대해 최저자본금(기금)을 10억 엔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간의 차이는 없다. 또한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상호에 손해보험회사인지 생명보험회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생명보험업 면허를 받은 회사는 생명보험이 상호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업 면허를 받은 경우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

57)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각총리장관의 심사와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제123조제1항, 제124조), 내각총리장관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명령을 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변경내용이 인가된다(법 제125조제1,2항).

58) 자동차보험의 위험세분화는 연령, 성별, 운영경력, 차량의 용도, 연간 주행거리, 지역, 자동차 종류, 안전장치의 유무, 자동차 소유대수로 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험, 재보험, 손해보험 중의 하나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3조)

소액단기보험사업자는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본금 또는 기금은 최저 1,000만 엔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액단기보험사업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이 3억 엔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반보험회사에 비해 최저자본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확보하기 위해 사업규모에 따라 공탁금⁵⁹⁾을 공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보험업법 제272조의 5). 그러나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내각총리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금액에 대해서 공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한도는 “공탁할 금액-1,000만 엔”이다.

외국사의 지점으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사와 유사한 면허가 필요하며 계약자보호를 위해 2억 엔 이상을 공탁⁶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사채권, 기타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6) 임원 및 대주주 요건

보험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회사법상의 법정 결격사유(제331조제1항, 제402조제4항)가 적용됨과 동시에 보험업법에서 특별한 적격성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임원은 경영관리를 정확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보험회사의 임원이 경영관리능력과 사회적신용 요건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

59) 사업초년도에는 1,000만 엔을 공탁하며, 차년도부터는 1,000만 엔의 공탁금에 1년간의 보유보험료(수입보험료 + 재보험환급금 - 재보험료 - 해약환급금)의 5%를 추가로 공탁해야 한다.

60) 조건부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사지점은 1,000만 엔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조건부라는 의미는 일본과 미국과의 상호협정 및 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하여 시설, 지역, 일본 국내에서 있어 미군지휘에 관한 협정에 의한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보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면허를 말한다.

우에는 보험면허에 영향(보험업법 제5조1항2호)을 미치고 해임명령(보험업법 제133조제1호)을 내릴 수 있다.

주주의 적격성요건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건전성과 출자능력이 있어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유의결권 대량보유자에게 주식보유현황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271조의3), 인가받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유의결권대량보유자는 하나의 보험모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의 총주주 의결권을 5% 이상 보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의결권으로써 보유목적이 보험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보험회사 총주식의 2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자(보험주요주주)는 법 제 271조의10에 의거 내각총리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주요주주가 회사의 재무나 영업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추측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주요주주의 기준이 보유주식수 15%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 퇴출규제

1) 규제내용

일본 보험회사의 퇴출은 법인의 해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험회사의 해산원인으로는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주총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면허취소이다. 보험회사가 해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각총리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때 인가신청 시에 갖추어야 할 서류로는 이유서, 주총의사록, 재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 해산공고내용 등이다.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인가를 받은 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회사의 퇴출은 파산원인을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한 자발적인 퇴출과 비자발적인 퇴

출로 구분할 수 있다.

비자발적인 퇴출은 합병 또는 해산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해당되며, 나머지의 사유(해산명령, 면허취소, 파산 등)는 강제적 퇴출에 해당된다. 먼저 비자발적인 퇴출은 자기자본규제(솔벤시마진)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본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표 IV-16〉 일본의 적기시정조치 내용

| 구분 | 자기자본비율 | 감독당국 명령 조치 |
|------|--------------------|--|
| - | 200% 이상 | •특별한 명령조치 없음(재무적으로 안정하다고 봄) |
| 제1구분 | 100% 이상 200% 미만 |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요구 및 실행 |
| 제2구분 | 0% 이상 100%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금 등의 지급능력충실과 관련된 계획제출 및 실행 •배당금지 및 기타 억제, 계약자배당 및 사원잉여금 분배 금지 •신보험계약 관련 보험료계산방법의 변경, 사업비 억제 •임원상여금지 등 사업비 억제, 일부 자산운용 금지 •일부 영업소 업무축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제외한 일부 영업소, 사무소의 폐지 •자회사 등 업무의 축소,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부수업무, 타법에 의한 업무 등에 축소, 신규취급의 금지 •기타 금융청장관이 정하는 조치 |
| 제3구분 | 0% 미만 | •기한을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2) 보험계약자보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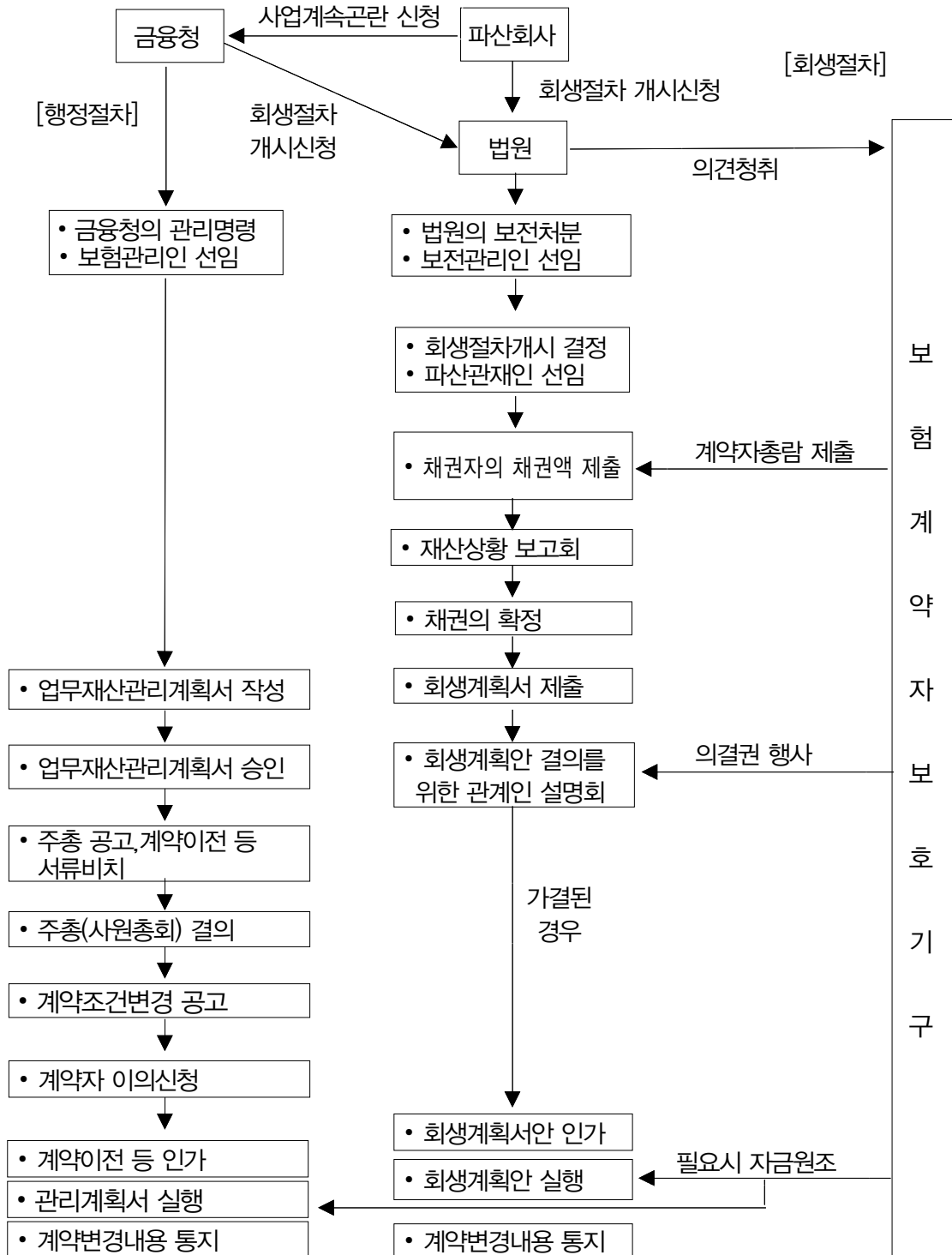
보험회사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업무가 전부 정지되고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보험업법 제11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부실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보험업법 제240조의2). 이에 의하면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 보험회사가 업무 및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업의 계속이 곤란하게 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각총리장관에게 보험금액의 삭감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내각총리장관은 신청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기준일 현재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보험금 삭감의 조치만 적용된다.

일본 보험회사의 파산처리방법은 보험업법에 의한 방법과 회생절차법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그 절차를 보면 <그림 IV-1>과 같다. 먼저 보험업법에 의한 퇴출절차를 거친 사례를 보면 일산생명, 동방생명, 제일화재, 제백생명, 대정생명 등이 있으며, 파산처리과정에서 책임준비금을 10%씩 삭감하고 예정이율⁶¹⁾도 해당회사의 이차 역마진상태에 따라 인하폭을 달리하여 인하였다. 2000년 이후에 파산한 천대전생명, 협영생명, 동경생명, 대성화재, 대화생명 등 보험회사는 회생절차법에 의해 파산처리 되었으며 이들 회사도 준비금을 삭감하거나 예정이율을 인하였다.

61) 보험업법 제240조의2에 의거 보험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정이율의 인하는 시행령 제36조의3)에서 최저 연 3%로 제한하고 있으며, 파산한 후에는 제한이 없으며 3%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IV-1〉 일본 파산보험회사의 처리절차



자료: 生命保險文化センター(http://www.jili.or.jp/consumer_adviser/pdf/chapter10.pdf).

〈표 IV-17〉 일본 파산보험회사의 계약조건 변경 현황

| 회사명 (파산일) | 채무초과액/ 지원금액 | 근거법 | 계약조건변경 | | 퇴출방식 |
|-----------------------|-----------------------|-----------|--------|--------|--------------------|
| | | | 준비금삭감 | 예정이율인하 | |
| 일산생명 (97. 4. 25) | 3,029억 엔/ 2,000억 엔 | 보험 업법 | - | 2.75% | 계약이전 (푸르텐셜) |
| 동방생명 (99. 6. 5) | 6,500억 엔/ 3,663억 엔 | 보험 업법 | 10% | 1.5% | 계약이전 (GE파이낸스) |
| 제일화재 (00. 5. 1) | 1,245억 엔/ 400억 엔 | 보험 업법 | 10% | 인하 | 청산 (계약자보호기구) |
| 제백생명 (00. 6. 1) | 3,177억 엔/ 1,450억 엔 | 보험 업법 | 10% | 1.0% | 계약이전 (메뉴라이프) |
| 대정생명 (00. 8. 29) | 365억 엔, 267억 엔 | 보험 업법 | 10% | 1.0% | 계약이전 (대화생명) |
| 천대전생명 (00. 10. 13) | 5,950억 엔/ 0엔 | 회생 특례법 | 10% | 1.5% | 푸르텐셜 인수 |
| 협영생명 (00. 10. 23) | 6,895억 엔/ 0엔 | 회생 특례법 | 8% | 1.75% | 주식회사화, AIG스타 인수 |
| 동경생명 (01. 3. 31) | 731억 엔/ 0엔 | 회생 특례법 | - | 2.6% | T&D파이낸셜생 명인수 |
| 대성화재 (01. 11. 22) | 398억 엔/ 0엔 | 회생 특례법 | - | 2.6% | 손보저팬 인수 |
| 대화생명 (08. 10) | 643억 엔/ 278억 엔 | 회생 특례법 | 10% | 1.0% | 지블렐타생명 인수 |

주: 지원금액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서 지원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금융청(<http://www.fsa.go.jp>).

보험회사가 파산된 경우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는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로 보험업법⁶²⁾에 1998년 12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보험회사가 파산한 사례가 없었으나 부동산거품의 붕괴에 이은 저금리현상의 지속에 따라 많은 보험회사가 파산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보험회사(외국사 포함)가 파산한 경우 파산보험회사의 계약이전, 합병, 주식취득 등의 자금 원조를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한다. 보호기구는 생

62) 제10장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등, 제4절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자금원조 등, 제1관 보험계약자보호기구(제259조-제271조의2의3).

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분리하여 운영되며, 보험업법 제262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보호대상 보험은 사망보험, 생존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지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신용보험, 1년 미만 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 연금식적립상해보험, 의료 및 간병보험이다. 보호한도는 책임준비금의 90%이며 자동차배상책임보험과 지진보험은 예외적으로 책임준비금의 100%를 보상하고 있다.

〈표 IV-18〉 일본 보험계약자보호제도

|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 운영기구 |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 |
| 대상보험 | 사망보험, 연금보험 | 자배책보험, 지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기타보험중 개인보험 |
| | 1년 미만 상해보험, 특정해외여행상해보험, 기타질병상해보험(연금식적립상해보험, 의료간병보험) | |
| 보장한도 | 책임준비금의 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배책, 지진보험 100% •화재, 자동차, 기타손보: 보험금 파산 3개월 이내 100%, 그 이후 80%, 해약 및 만기환급금은 80% •제3분야: 책임준비금의 90% |
| 보험료체계 | 연간분담액 400억 엔 사전적립한도액 4,400억 엔 | 연간분담액 50억 엔 사전적립한도액 500억 엔 |
| 보험료납부 | 사전적립(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 | 사전적립(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 |

3. 독일

가. 보험회사 현황

독일의 보험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일정 소득이상이 되는 국민에게 공적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건강보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현재 연방보험감독청(Bafin: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는 390개사로 2000년에 비해 79개사나 줄었다. 이렇게 줄어든 보험회사는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로 43개사이다. 영위하는 보험종목별 회사를 보면 2010년 현재 생명보험회사 95개사, 손해보험회사 211개사, 재보험회사 36개사이다.

〈표 IV-19〉 독일 보험회사 현황

(단위: 개, 억 유로, %)

| 구분 | | 1980 | 1990 | 2000 | 2007 | 2008 | 2009 | 2010 |
|---------|-----|------|------|-------|-------|-------|-------|-------|
| 회사 수 | 생보사 | 108 | 109 | 119 | 100 | 99 | 96 | 95 |
| | 건강사 | 51 | 55 | 55 | 51 | 51 | 51 | 48 |
| | 손보사 | 344 | 322 | 254 | 224 | 222 | 217 | 211 |
| | 재보사 | 33 | 28 | 41 | 41 | 41 | 38 | 36 |
| | 소계 | 536 | 514 | 469 | 416 | 413 | 402 | 390 |
| 보험료 | 생보사 | 132 | 274 | 612 | 789 | 795 | 852 | 903 |
| | 건강사 | 48 | 95 | 207 | 294 | 303 | 314 | 333 |
| | 손보사 | 179 | 329 | 493 | 544 | 546 | 547 | 552 |
| | 재보사 | 71 | 137 | 288 | 322 | 313 | 346 | - |
| | 소계 | 360 | 699 | 1,313 | 1,629 | 1,645 | 1,714 | 1,789 |
| 회사당 보험료 | 생보사 | 1.2 | 2.5 | 5.1 | 7.9 | 8.0 | 8.9 | 9.5 |
| | 건강사 | 0.9 | 1.7 | 3.8 | 5.8 | 5.9 | 6.2 | 6.9 |
| | 손보사 | 0.5 | 1.0 | 1.9 | 2.4 | 2.5 | 2.5 | 2.6 |
| | 재보사 | 2.2 | 4.9 | 7.0 | 7.9 | 7.6 | 9.1 | - |
| | 소계 | 0.7 | 1.4 | 2.8 | 3.9 | 4.0 | 4.3 | 4.6 |

자료: GDV(2011), p. 1.

독일 보험시장은 보험회사는 감소하는 대신에 수입보험료는 건강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회사의 집중현상은 증가하고 있다. 영위하고 있는 회사당 보험료를 보면 1990년에 1.4억 유로였으나 2000년에 그의 두 배인 2.8억 유로로 증가했고,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0년에는 4.6억 유로나 된다.

독일의 보험시장의 집중도를 보면 단일시장에 따른 규제완화로 인해 다소 대형사에게 집중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 더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CR5는 1980년 37.4%에서 2009년 37.7%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0년에 48.5%로 크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CR10, CR15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현재 각각 67.9%, 78.4%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시장도 생명보험시장과 유사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CR5를 보면 1990년 24.8%에서 매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42.9%로 증가했고, CR10도 1990년 37.5%에서 2010년 63.5%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시장은 상위회사의 집중도가 매우 크고 연도별 시장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CR5는 1990년 54.1%였으나 2010년에도 54.1%로 나타났고, CR15도 1990년 85%에서 2010년 90.3%로 약간 증가하였다.

〈표 IV-20〉 독일 보험산업의 집중도 추이

(단위: %)

| 구분 | | 1980 | 1990 | 2000 | 2005 | 2009 | 2010 |
|----------|------|------|------|------|------|------|------|
| 생명 보험 | CR5 | 37.4 | 33.0 | 30.8 | 33.7 | 37.7 | 48.5 |
| | CR10 | 50.7 | 47.6 | 46.5 | 48.8 | 53.1 | 67.9 |
| | CR15 | 61.4 | 58.2 | 58.3 | 60.1 | 64.1 | 78.4 |
| 건강 보험 | CR5 | 57.0 | 54.1 | 52.2 | 50.5 | 49.3 | 54.1 |
| | CR10 | 77.7 | 72.9 | 72.1 | 69.7 | 71.4 | 78.4 |
| | CR15 | 90.9 | 85.0 | 83.9 | 82.5 | 83.8 | 90.3 |
| 손해 보험 | CR5 | 25.4 | 24.8 | 27.6 | 30.9 | 31.2 | 42.9 |
| | CR10 | 37.7 | 37.5 | 39.5 | 42.6 | 45.6 | 63.5 |
| | CR15 | 47.9 | 48.1 | 49.4 | 52.5 | 55.7 | 75.0 |
| 재보험 | CR5 | 69.6 | 71.3 | 72.4 | 76.0 | 85.1 | - |
| | CR10 | 85.3 | 88.5 | 90.1 | 91.1 | 95.7 | - |
| | CR15 | 94.0 | 96.7 | 95.8 | 97.3 | 98.8 | - |

자료: GDV(2011), p. 21.

나. 진입규제

독일은 EU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지침에 따라 자국의 보험사업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법규를 보험법(VAG: Law on the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s)

과 보험계약법(VVG: Insurance Contract Law)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로 보험회사의 감독과 관련해서는 보험법에 반영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진입규제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1) 보험업의 구분

독일 보험법은 보험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없다. 다만 EU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통합지침⁶³⁾상에서 어떤 것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지 해당 보험종목을 열거하고 있다. 먼저 생명보험의 정의를 보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생명보험지침 제2조). 첫 번째 영역으로는 계약에 기초한 생명보험(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보험료환급부생명보험, 결혼보험, 출산보험), 연금, 생명보험에 추가된 보완적 보험(치료불능을 포함한 인적상해보험, 사고에 의한 사망보험,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고도장해보험)을 하나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으로는 민영보험의 감독 하에 있는 계약에 의한 톤틴연금⁶⁴⁾, 자금상환업무(capital redemption⁶⁵⁾ operation)⁶⁵⁾, 단체연금기금관리, 자금관리 또는 이자지급을 담보하는 보험을 수반하는 단체연금관리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영역으로는 사회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수명의 길이에

63) 유럽의 생명보험지침은 2004. 6. 19부로 1차지침(79/267/EEC), 2차지침(90/619/EEC), 3차지침(92/96/EEC), 재무감독지침(95/26/EC), 정보교환지침(2000/64/EC), 지급여력지침(2002/12/EC)을 폐지하고 통합지침(2002/83/EC)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손해보험 1, 2, 3차지침이 존재하고 개별종목별(자동차보험, 신용보증, 어시스턴스보험, 소송비용보험) 관련지침이 존재한다. 日本 損害保險總合研究所(2006), pp. 7~9.

64) 1968년 이탈리아의 은행가이자 수학자였던 로렌조 톤티(Lorenzo Tonti)가 고안한 '톤틴연금(Tontine pension)'이다. 톤틴연금은 국고(國庫)에 자금을 예치하는 사람에게 원리금 대신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국가 재정에 보태려는 목적으로 최초로 시행했다. 특이한 것은 동일한 연금 그룹에 지급되는 연금 총액이 매년 동일해 사망자가 있을 경우 생존한 사람들의 연금액이 그만큼 많아지고 생존자가 1명만 남을 경우 전액을 혼자 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종신보험과는 다른 개념이다(파란사전 참조, <http://dic.paran.com>).

65) 보험수리적계산에 기초하여 사전의 합의에 따라 일괄 또는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를 받아 특정기간에 특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한 업무 중에서 법률에 의거 보험회사 자신의 리스크로써 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손해보험업은 생명보험업의 영위종목에 해당하지 않은 종목이 된다(손해보험 제1차지침 제2조제1항).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본체 내 겸영은 일부 국가에서 기존의 겸영허용회사를 제외하고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제한하고 있다(생명보험통합지침 제18조제1항). 유럽지침에서는 상해와 질병리스크에 대해 겸영을 허용하지만 생명보험과 상해 또는 질병보험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을 별개의 사업으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겸영을 계속할 수 있다(생명보험통합지침 제18조제3항).

EU 지침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적용제외를 두고 있다. 손해보험업의 경우 각 국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금상환업무, 재원에 따라 급부금이 변동하고 각출금이 정률로 결정되는 상호부조기관의 업무, 보험료를 선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서 법인이 아닌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상호보상업무, 국가의 수출신용보험, 일정조건⁶⁶⁾을 만족하는 상호단체, 자신이 인수한 모든 계약을 출재하고 수재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에 기초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정한 계약을 동종의 단체와 체결한 상호단체(captive), 일정지역에서 현물급부에 의한 어시스턴스보험⁶⁷⁾(종목번호 18)만을 행하며 연간 사업수입이 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된다(손해보험 제1차지침 제3조).

또한 생명보험의 적용제외는 재원에 따라 급부금이 변동하고 각출금이 정률로 결정되는 상호부조기관의 업무, 사업자 또는 동업자 또는 이들 그룹에 속하는 종업원 혹은 자영업자에게 사망 또는 생존급여금 또는 사업정지 혹은 사업축소에 따른 급부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단체사업, 사회보장의 법정제도 일부를 구성

66) 추가각출의 청구 또는 급부금의 삭감을 정하는 정관이 있을 것, 배상책임리스크와 신용 및 보증리스크인수를 행하지 않을 것, 사업연간수입료가 5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사업의 수입금의 50% 이상을 회원의 지출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67) 어시스턴스보험은 여행 중 또는 자택 또는 영주권이 있는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에 곤란을 입은 계약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보험을 의미하며, 지침상 보험종목 분류번호 18에 해당한다. 어시스턴스보험지침(84/641/EEC)은 어시스턴스보험을 손해보험 제1차지침의 종목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1984년에 제정되었다.

하는 보험사업, 추가 각출청구 또는 급부금 삭감에 대해 사전에 정하는 정관에 따라 사업의 연간 각출금수입이 3년 연속으로 5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상호 단체의 업무이다(생명보험통합지침 제3조 Activities and Bodies Excluded).

2) 보험사업 영위형태

EU지침에서는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법적형태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원국가가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보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식회사, 상호회사, 사회보험법전 또는 농업법에 규정된 기관, 상호부조조합법에 의한 상호부조조합으로 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ies), 상호보험조합(mutual societies), 공영보험회사(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under public law)로 제한하고 있다(보험법 제7조 permissible legal forms). 독일 보험회사들의 법적형태 변화를 보면 최근에 들어 상호회사와 공영보험회사는 줄어들고 주식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주식회사가 81.7%, 상호회사는 15.9%, 공영보험회사는 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21〉 독일 보험회사의 법적형태별 현황

(단위: 개사, %)

| 구분 | | 1990 | 2000 | 2005 | 2007 | 2008 | 2009 |
|----------|------|------|------|------|------|------|------|
| 주식 회사 | 회사 수 | 281 | 324 | 321 | 321 | 307 | 305 |
| | 점유율 | 69.1 | 76.1 | 82.7 | 83.0 | 82.6 | 81.7 |
| 상호 회사 | 회사 수 | 352 | 299 | 267 | 268 | 268 | 268 |
| | 점유율 | 19.9 | 17.7 | 14.9 | 14.6 | 15.1 | 15.9 |
| 공영 보험 | 회사 수 | 47 | 27 | 18 | 18 | 18 | 17 |
| | 점유율 | 8.3 | 5.2 | 1.5 | 1.4 | 1.5 | 1.5 |
| 기타 | 회사 수 | 81 | 16 | 10 | 6 | 6 | 6 |
| | 점유율 | 2.6 | 1.4 | 0.9 | 0.9 | 0.8 | 0.9 |

자료: GDV(2011), p. 3, p. 6.

3) 보험업 면허종류

유럽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본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감독당국의 사전 면허를 받아야 가능하다. 또한 면허를 받은 경우 유럽회원국 전체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손해보험 제3차지침 제4조, 생명보험통합지침 제4조). 아울러 보험사업의 인가는 보험종목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18개 종목, 생명보험은 9개 종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보험법 제5조), 인가받지 않고 보험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보험법 제140조). 보험사업의 인가는 종목단위별로 하며, 본체 내에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겸영과 건강보험과 다른 보험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나(보험법 제8조 1(a)) 지주회사 형태로는 가능하다. 보험회사가 보험영업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독당국의 심사기간은 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가보험종목의 단위는 다음과 같이 총 25개 종목으로 구분하고 있다(보험법 Annex A, classification of risks by class of insurance).

1. 상해보험: 정액급부보험, 실손급부보험, 정액과 실손급부를 혼합한 보험, 승객에 대한 상해담보보험
2. 질병보험: 정액급부보험, 실손급부보험, 정액과 실손을 혼합한 보험
3.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자동차차량보험: 자동차의 모든 손해담보보험, 자동차 이외의 모든 손해담보보험
4. 철도차량보험: 철도차량의 모든 손해담보보험
5. 항공기: 항공기 관련 모든 손해담보보험
6. 선박보험: 강 및 운하선박보험, 호수선박보험, 바다선박보험
7. 운송화물보험: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운송중인 화물의 손해담보보험
8. 화재 및 자연재해보험(종목 3. 차량보험에서 7. 운송화물보험까지의 종목 이외의 것 포함): 화재, 폭발, 폭풍, 폭풍 이외의 자연재해, 핵에너지, 땅의

침강으로 인한 재산의 모든 손해담보보험

9. 기타 재산손해보험(종목 3. 차량보험에서 7. 운송화물보험까지의 종목 이외의 것 포함): 8. 화재보험 자연재해보험의 담보하는 위험이외에 해일, 서리, 도난 등을 담보하는 보험
10. 육상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육상자동차운송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기타
11. 항공기배상책임보험: 항공기 사용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보험(운송자의 배상책임보험 포함)
12. 선박배상책임보험: 바다, 호수, 강 및 운하에 있는 선박, 보트의 사용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보험(운송자의 배상책임보험 포함)
13. 일반배상책임보험(위 10에서 12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배상책임을 담보)
14. 신용보험: 도산보험, 수출신용보험, 할부신용보험(instalment credit), 저당신용보험, 농업신용보험
15. 보증보험
16. 기타 금융손실보험: 고용리스크보험, 소득보상보험, 날씨보험, 보장손실보험, 경상비보전보험, 예기치 못한 거래비용보험, 시장가치손실보험, 수익 또는 임차비손실보험, 기타 거래관련 간접비용 보상보험, 기타금융손실보험(비거래관련), 금융손실의 다른 형태
17. 법률비용보험
18. 어시스턴스보험: 주거하는 집을 떠나있는 동안 또는 여행하는 동안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도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
19. 생명보험(20. 결혼보험과 출생보험, 21. 변액생명보험, 22. 톤틴, 23. 자본상환관련보험(capital redemption operations), 24. 퇴직 관련한 보험(퇴직연금) 이외의 보험
20. 결혼과 출생보험
21. 변액생명보험
22. 톤틴

23. 자본상환관련보험(capital redemption operations)⁶⁸⁾
24. 퇴직 관련 보험(퇴직연금)
25. 연금기금의 운용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종목별 인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종목단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보험(motor vehicle insurance)은 “1. 상해보험의 승객상해담보, 3. 육상차량보험, 운송중인 화물, 차량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상 및 육상운송보험은 “1. 상해보험 중 승객의 상해보험, 4. 철도차량보험(철도차량의 모든 손해담보), 5. 항공기(항공기 관련 모든 손해 담보 보험), 6. 선박보험(강 및 운하선박보험, 호수선박보험, 바다선박보험), 7. 운송화물보험(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운송중인 화물의 손해 담보 보험)”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보험은 “1. 상해보험 중 승객의 상해보험, 5.항공기(항공기 관련 모든 손해담보보험), 7. 운송화물보험(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운송중인 화물의 손해담보 보험), 11. 항공기배상책임보험”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와 기타위험을 담보하는 재산손해보험은 “8. 화재 및 자연재해보험, 9. 기타 재산손해보험”을 지칭한다.

배상책임보험은 “10. 육상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상책임보험, 11. 항공기 배상책임보험, 12. 선박배상책임보험, 보트의 사용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보험, 13. 일반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신용 및 보증보험은 “14. 신용보험(도산보험, 수출신용보험, 할부신용보험(instalment credit), 저당신용보험, 농업신용보험)과 15.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손해보험(property & casualty insurance)은 “1. 상해보험, 3.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자동차차량보험에서 13. 일반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면서 16. 기타 금융손실보험까지 인수하는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68) 보험수리적계산에 기초하여 사전의 합의에 따라 일괄 또는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를 받아 특정기간에 특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면허심사 요건

유럽에서는 보험사업의 면허를 받기위한 요건 5가지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 3차지침 제6조, 생명보험통합지침 제6조). 보험회사가 면허를 받기위한 조건들을 보면 첫째, 각 국가에서 정한 회사형태(legal forms)를 갖추어야 하며, 둘째, 업무범위는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범위와 부수업무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며, 셋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넷째, 소정의 최저보증기금(minimum guarantee fund)을 확보해야 하며, 다섯째, 적절한 전문적 자질 또는 경험을 가진 신용 있는 자에 의하여 운영될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진입 시의 심사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제출서류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저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보험법 제5조 제출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자본적정성요건)에서 보험회사의 최저보증기금(minimum guarantee fund)⁶⁹⁾은 EU지침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보증기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보험종목별로 정하고 있지만 요구지급여력(required solvency margin)의 1/3을 하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상호조합 또는 상호회사, 톤틴연금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최저보증기금 1/4를 필요로 한다. 특징적인 것은 생명보험의 최저보증기금액은 2년마다 검증하여 필요시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생명보험통합지침 제30조).

69) 향후 도입될 Solvency II에서는 법정자본금요건(mandatory capital requirement)으로 대체되며 생명보험회사는 320만 유로 이상,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보험을 인수하는 손해보험회사는 220만 유로이며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여 인수하는 회사는 320만 유로이다(캡티브회사도 동일함). 그리고 재보험회사는 320만 유로이며 캡티브재보험회사는 100만 유로이다. DIRECTIVE 2009/1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on the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Solvency II) 제128조 참조.

〈표 IV-22〉 EU 보험종목별 최저보증기금

(단위: 유로)

| 구분 | 세부종목 | 최저보증기금액 | |
|------|---|---------|-----------------|
| | 생명보험 | 300만 | 상호회사는 1/4 필요 |
| 손해보험 | 법률비용보험 | 150만 | |
| | 배상책임보험(자동차, 항공기, 선박, 일반배상) 신용보험, 보증보험 | 300만 | |
| | 상해, 질병, 육상차량, 철도차량, 항공기기체, 선박, 운송물, 화재 및 자연재해, 각종경제적손실담보 | 200만 | |

주: 손해보험에서 두 종목 이상 영위하는 경우 가장 많은 것을 적용함.
자료: 손해보험 제3차지침 제17조, 생명보험통합지침 제29조.

5) 면허신청절차

유럽지침에서는 보험사업 면허신청 시에 5가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손해보험 제3차지침 제7조, 생명보험통합지침 제7조). 사업계획서에는 보험회사가 인수할 보험종목, 재보험에 관한 기본계획, 최저보증기금을 구성하는 자산항목, 사무관리서비스 및 조직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과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 향후 3년간의 예상대차대조표를 추정하고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급여력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추정을 내야 한다. 보험사업과 관련한 보통보험약관⁷⁰⁾, 요율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기초서류는 본래 생명보험지침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손해보험 제1차지침에 존재했으나 손해보험 제3차지침을 제정하면서 징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⁷¹⁾

70) 보통보험약관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담보하는 손해와 담보하지 손해사항, 보험사고시 지급보험금액의 결정방법과 지급방식, 보험료납입시기와 지급보험금 신청기한, 계약자가 보험계약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권리 및 계약전후에 있어서 통지 및 고지의무사항,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 관할법원, 배당에 관한 기준이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보험법 제10조).

71) 손해보험사업종합연구소(2006), p. 71.

독일의 경우 보험법 제5조에서 보험업의 영업인가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operating plan)를 내도록 하고 있고 면허의 심사기간은 제한이 없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구조, 사업지역, 미래 부채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재무적 대책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수하여 첨부할 서류가 다수 있다. 먼저 보통보험약관(general policy condition)은 아니지만 영위 보험종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memorandum), 영위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정보(특히 사망보장⁷²⁾담보의 경우에는 보통보험약관과 보험료산출 및 준비금산출방법서⁷³⁾를 제출해야 하며, 산출기초, 산출공식, 실제계산결과, 사용된 통계적 증거도 제시 필요)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식회사법 제291조 및 제2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협정(enterprise agreements)의 내용과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판매채널, 보험계약관리, 손해사정, 회계, 투자 및 자산관리를 위탁한 경우 이에 대한 협정 문서를 내어야 한다.

보험사업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보험종목별 최저보증기금(minimum guarantee fund)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비, 예측 보험료 및 보험금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영위 보험종목별 특징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 먼저 대체형건강보험과 의무보험은 보통보험약관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사용된 계산기준 및 산출공식, 실제계산사례 및 통계적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추

72) 2007년 개정 시 기업연금(pension)은 제외되었다.

73) 유럽지침에서는 약관, 요율표, 보험계약준비금의 계산의 기술적 근거 및 계약종류의 서식 등 인쇄물에 대해 사전적으로 인가하거나 획일적인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손해보험 제1차지침 제8조제3항: 제3차지침 제6조, 생명보험지침 제6조제5항). 이에 대해서 손보의 경우 손해보험 제2차지침(1988년) 도입 시 보험약관 및 요율의 인가제도를 폐지했으며, 손해보험 제3차지침(1992년)에서는 보험사업 면허신청시에 보험약관, 보험료 및 준비금산출방법서를 제외시켰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2002년 생명보험통합지침을 제정되면서 약관 및 요율의 사전인가제를 폐지함과 더불어 사업면허신청시 약관과 보험료를 제출서류에서 제외했다.

가하여 재보험 관련정보, 행정 및 판매네트워크와 관련한 비용추정서도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적요건에 해당하는 조항도 있는데 임원의 신뢰성과 적격성에 관한 정보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보험법 제7a(1)). 보험회사의 주식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식 수 등을 내어야 하며 선임계리사의 신뢰성과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6) 면허신청 거부요건

신청된 면허에 대해 감독당국은 보험사업자와 기타 법인 또는 자연인이 경영 참가 또는 지배관계 등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자연인 또는 법인이 유럽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있어서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손해보험 제1차지침 제8조, 생명보험통합지침 제6조2항). 또한 보험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의 신분과 보유주식수 정보가 사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감독당국이 건전경영관점에서 보아 대주주의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생명보험통합지침 제8조).

독일은 보험법 제8조(Refusal, Suspension and Restriction of Authorization)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정하고 있다. 먼저 보험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요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둘째, 사업계획서나 관련서류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거나 계약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주로 참고하는 것은 원보험회사가 다른 기업의 관계사 혹은 밀접한 관련으로 인해 소유구조나 경제적 투명성의 결여로 인해 효과적인 감독을 방해할 수 있을 때이다. 또한 비유럽국가의 기업이나 투자자와 법적 또는 행정적 조항에 의하여 효과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 퇴출규제

1) 규제내용

EU지침에서는 보험회사의 재건조치나 청산절차의 개시에 대해 본점 소재국가의 감독당국이 결정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사업의 영업인가를 내준 해당국가의 감독기관이 행사하게 된다. 보험회사가 해산이나 청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채무초과인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임의적인 청산 또는 강제적인 청산으로 구분된다(보험회사 재건청산지침⁷⁴⁾ 제2조(d)). 청산절차가 개시되면 보험회사의 면허는 취소되며, 청산절차의 내용과 효력은 본점 소재국가의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각 회원국은 보험회사의 권한이나 채권자의 청구권 신청에 관한 규정 등 일정의 항목에 대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재건청산지침 제9조).

독일은 보험법 제87조(Revocation of Authorization, Dismissal of Managers)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인가요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사업계획이나 법규상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경우에 종목전체 또는 일부 종목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급여력이 부족하여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면허 전체를 취소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험회사의 청산절차를 거치는 경우 감독관청은 이를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보험법 제86조).

74) 동 지침(Directive 2001/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01 on the reorganization and winding-up of insurance undertakings)은 EU 파산절차지침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는 원수보험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계약자보호제도

보험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보험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보험계약채권의 우선변제규정과 지불보증제도이다. 먼저 보험계약채권의 우선변제는 청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이다(재건청산지침 제10조). 여기서 말하는 보험계약채권자는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금수취인 또는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가진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채권금액은 보험계약상 지출책임을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의 미완료나 해약에 기인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반환채무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법 제163조(보험료 및 급부의 변경)와 보험법 제59조(지급 금지, 급부의 삭감 Prohibition of Payment: Reduction of Benefits)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계약법 제163조제1항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 대해 “첫째, 합의된 보험료의 계산기초에 대한 급부의 변경 필요성이 일시적인 변화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예측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 둘째, 보험급부의 지속적인 이행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된 계산기초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가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점, 셋째, 독립감사인인 그 계산기초와 위 두 요건을 심사하고 확인할 것”을 충족하는 경우에 합의된 보험료를 새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는 제1항의 보험료의 인상을 대신하여 보험급부를 삭감할 수 있다(보험료완납보험). 이러한 결정 내용에 대한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익익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보험료의 새로운 조건이나 보험금의 삭감에 대해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감사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보험법에서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경영 및 재무 감사를 한 결과, 보험회사가 더 이상 보험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감독청은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특정한 기간 내에 경영 원칙을 변경하고 보험금지급이나 이익배분, 약관대출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이

에 더하여 감독당국은 생명보험계약의 부채를 당시의 금융상황을 고려하여 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셋째, 강제적 퇴출은 대부분 자본적정성기준(보험법 제53조)에 미달하지 못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때에 발생하고 계약자보증제도(guarantee scheme)를 통해 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적기시정조치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EU지침 상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자본량(required solvency capital)과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기자본(available solvency capital), 최저보증기금(minimum guarantee fund)을 비교하여 3단계의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보험법 제81b조). 3단계의 재무복구계획에는 3년간의 관리비용, 원수보험 및 재보험을 감안한 수입과 지출, 추정 대차대조표, 보험채무 및 부족자본량을 담보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적기시정조치는 Solvency II가 시행되는 경우에 3단계로 운영될 예정이다.⁷⁵⁾

75) 향후 시행될 Solvency II에서는 최저보증기금 대신에 의무규제자본금(MCR)이 도입되는 등 자본금 종류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다단계로 취할 예정이다.

| 구분 | 추가보고 | 재무복구계획서 | 신사업금지 | 면허취소 |
|-----------|------|---------|-------|------|
| 적정자본금 유지 | 불요 | 불요 | 불요 | 불요 |
| 조정지급능력자본금 | 필요 | 가능 | 불요 | 불요 |
| 지급능력자본금 | 필요 | 필요 | 가능 | 불요 |
| 의무자본금 | 필요 | 필요 | 필요 | 가능 |

- 주: 1) 의무규제자본금(mandatory capital requirement)은 보험회사가 확보해야 할 최저 규제자본금.
 2) 지급능력자본금(solvency capital requirement)은 표준공식 또는 승인된 내부모형으로 산출된 요구되는 자본금.
 3) 조정지급능력자본금은 지급능력자본금에 감독당국이 인정한 보완적 자본금을 합한 자본금을 의미함.

자료: <http://solvencyii.co.uk/capitalrequirements.html>

〈표 IV-23〉 독일의 적기시정조치 기준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적용 기준 | 요구자본량 > 자기자본 | 요구자본량 > 최저보증기금 | 자기자본이 최저보증기금보다 적은 경우 또는 재무개선계획 미수행으로 지급여력 부족 시 |
| 조치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개선계획(solvency plan) 제출, 승인 필요 자유로운 자산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재무계획서(financing plan) 제출, 승인 필요 자유로운 자산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년간 재무복구계획서(financial recovery plan) 제출, 승인 필요 계획이 지정기간 내에 행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

독일에서는 보험회사가 재무적인 문제로 파산한 경우 보험계약자보증기구(guarantee scheme)를 통해 보호를 받는데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계약자 등을 보호하고 있다(독일 보험법 제123조 a 에서부터 제133조 a).

독일의 보험계약자보증기구는 2002년 민간차원에서 만들어져 운영되어 오다 2004년부터 법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에만 존재하고 손해보험은 없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생명보험계약자보증기구에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기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부분까지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구에서 파산한 보험회사의 계약을 전부 이전받아 계약책임이 종료될 때까지 보상해준다. 다만, 감독당국이 보증기구의 자산상황으로 보아 계약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부금을 최대 5%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보험법 제125조제5항).

〈표 IV-24〉 독일 보험계약자보증제도

| 구분 | 생명보험 | 건강보험 |
|-------|--|------------------------------|
| 운영기구 | 생명보험계약자보증기구 (Life IGS) | 건강보험계약자보증기구 (Mediator AG) |
| 대상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보험, 출생보험, 변연보험, 톤틴, 자금상환상품 기업연금은 임의가입 | 공적보험, 대체형 건강보험 |
| 보상한도 | 전액(부족한 경우 5% 삭감 가능) | 전액(부족한 경우 5% 삭감 가능) |
| 목표기금액 | 책임준비금의 0.1% | - |
| 각출액 | 연간: 책임준비금의 0.02% 특별: 책임준비금의 0.1% | 사후각출: 책임준비금의 0.2% |
| 차등보험료 | 전년도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3등급 ±25% 차등(2등급 기본) | - |
| 정부보조 | 없음 | |

넷째, 독일에서는 보험계약의 이전(transfer of portfolio)을 허용하고 있다 (제14조). 보험계약 이전은 이전할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 일부 또는 전부 이전이 가능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급여력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전받은 보험회사는 이전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